

201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

(주)한솔아카데미
배점 40 / 100

과 목 : 대지계획

제2과제(대지분석 · 대지조닝 · 대지주차)

제 목 : 근린생활시설의 최대 건축가능 규모계획

1. 과제개요

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한다.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구하고 배치도, 단면도 및 계획개요를 작성하시오.

2. 설계개요

- (1)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
- (2) 최고높이 : 20m 이하
- (3) 건 폐 율 : 60% 이하
- (4) 용 적 륜 : 250% 이하
- (5) 용 도 :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
- (6) 주변현황 : <대지 현황도> 참조

3. 계획조건

- (1) 기존 건축물(지상1층)은 수직, 수평 증축이 가능한 구조이다.
- (2) 각 층의 층고(기존 건축물 포함)는 4m로 한다.
- (3) 바닥면적 산정 시 벽체 두께를 고려하지 않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각층의 경사면은 수직벽면을 기준으로 한다.
- (4) 계획대지, 인접도로 및 1층 바닥레벨은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한다.
- (5) 계획대지는 보차분리가 없고 도로중앙선이 있는 8m 도로와 4m 도로에 접한다.
- (6) 주차대수는 총 4대를 계획하고 주차단위구획은 2.5m×5.5m로 한다.
- (7) 주차장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필로티에 설치하지 않으며 옥외에 자주식 주차로 한다.
- (8)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.




4.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

- (1)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
 - ① 높이 9m 이하인 부분 : 1.5m 이상
 - ②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: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
- (2) 증축되는 건축물과 도로경계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
 - ① 도로경계선 : 1.5m 이상
 - ② 인접대지경계선 : 1.5m 이상
- (3) 보호수림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: 1.5m 이상
- (4) 주차구획과 인접대지경계선 또는 건축물로부터의 이격거리 : 0.5m 이상
- (5) 옥탑 및 파라펫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.

5. 도면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

- (1) 최대 건축가능영역을 배치도 및 단면도에 <보기>와 같이 표시하고 계획개요를 작성한다.
- (2) 배치도를 작성할 때 중복된 층은 그 최상층만 표시한다.
- (3) 모든 제한선, 이격거리, 층수 및 치수를 배치도와 단면도에 표기한다.
- (4) 치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.
- (5) 단위 : m
- (6) 축척 : 1/200
- (7) 답안작성은 반드시 흑색 연필로 한다.
- (8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
<보기>

홀수층	
짝수층	
기존 건축물	

<대지 현황도> 축척 없음

